

News Alert | 공공정책솔루션센터 2024. 11. 13.

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영향

아래 내용을 골자로 하는 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(이하 ‘개정안’)이 2024. 11. 28.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, 같은 해 12. 6. 정부로 이송되었습니다. 개정안의 대부분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어, 빠르면 2025. 3. 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| 제목 | 주요 내용 |
|---------|--|
| 자료제출 |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·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함 (개정안 제2조) |
| 원격출석 | 정부·행정기관 등에 대한 서류등 제출 요구서를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, 증인·감정인·참고인이 질병, 부상,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출석할 장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원격출석할 수 있도록 함 (개정안 제5조제7항 및 제10항 신설) |
| 동행명령 확대 | 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범위를 현행 ‘국정감사·국정조사’에서 ‘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’까지 확대함 (개정안 제6조제1항) |
| 처벌강화 |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 ,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서류등을 제출한 자, 제출 요구 받은 서류등을 고의로 파기·은닉한 자, 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정보제공을 요구받고도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(개정안 제12조) |
| 처벌확대 |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로 위증 등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활동기한 이 종료된 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고발할 수 있도록 함 (개정안 제15조제4항 신설) |

개정안에 대해서는, (1)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상민감정보, 고유식별정보는 엄격히 보호될 필요가 있음에도 광범위한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점, (2) 동행명령 거부 시 벌금형 없는 5년 이하 징역형으로 그 법정형이 중함에도 개정안 제6조제1항의

‘중요한 안전심사’의 범위가 모호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, (3) 국정감사·국정조사와 중요한 안전심사 및 청문회의 동행명령 거부를 모두 동일한 법정형으로 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. 나아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사업계획 등을 제한없이 공개하게 하는 것은 국회의 기업 옥죄기가 될 것이라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.

하지만 국회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하여 국민들이 이전보다 큰 주목을 하고 있는 점, 국정감사·국정조사에서 동행명령의 결 건수가 장기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시행과 동시에 엄격한 집행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(개정안을 기초로 한 처벌 규정과 법정형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습니다).

| 구분 | | 법정형 |
|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 12 조(불출석 등의 죄) | 1.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2.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3.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요구를 거절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 4.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5. 증인·감정인·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6. 정보제공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정보를 송달기한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 |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|
| | 1.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서류등을 제출한 자 2. 제출 요구받은 서류등을 고의로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 |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|
| 제 13 조(국회모욕의 죄) | 1.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·협박,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2.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,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 |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|
| 제 14 조(위증 등의 죄) |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(서면답변을 포함)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|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|

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축적된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토대로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관련 구성원



임성택 대표변호사



김진권 변호사



사봉관 변호사



신용우 변호사



송경훈 변호사



곽경란 변호사